

##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

- ① 적용 기간: 2021년 10월 18일(월) 0시 ~ 10월 31일(일) 24시
- ② 적용 단계: 4단계
- ③ 방역 수칙

### <위험요인>

- ▲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, 악수, 포옹 등 비말과 접촉 발생
- ▲ 예식 후 식사 및 음주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
- ▲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, 단체 사진 촬영 시 등 밀집·밀접 접촉 가능
- ▲ 뷔페의 경우는 자리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,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.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
- ▲ 예식 후 후속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
- ▲ 지역·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
- ▲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m당 1명	▲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+ 웨딩홀별 4m당 1명	▲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m당 1명	
▲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-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			

▣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

- 단, 적용기간(10.18.~10.31.)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8명(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)까지 가능하며, 결혼식장 등 개별 시설에 대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아래 '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'에 의함

- 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\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\*\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- (종교시설) 2021.7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\*\*와 예방접종 완료자\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
\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\*\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## < 주요 적용 사항 >

- 개별 결혼식당 49명+웨딩홀별 4m²당 1명 가능
  - 단 참석자는 접종완료자(최대 201명) 포함 최대 250명 가능
- ※ 식사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+웨딩홀별 4m²당 1명에 예방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(총 199명)

## < 기본방역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<b>① 방역수칙 준수</b>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<b>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</b>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<b>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</b>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
	<b>④ 마스크 착용</b>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<b>⑤ 손씻기</b>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<b>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</b> 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안내 * 식당 등 부대시설의 경우 해당 방역수칙을 적용하되, 대기자 등 밀집되지 않도록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p>개별결혼식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및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</p> <p><b>⑦ 환기하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기시간 게시(권고)</li> </ul> </li> <li>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</li> </ul> <p><b>⑧ 소독하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일 1회 이상 소독</li> <li>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</li> </ul> <p><b>⑨ 기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</li> </ul>	
추가 수칙	<p><b>① 뷔페, 식당 이용 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</li> </ul> </li> <li>■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제공</li> </ul> <p>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가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</li> </ul> <p><b>② 만남 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안내</li> <li>■ 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 안내</li> </ul> <p><b>③ 시설 내 공용 장소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흡연실, 화장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역수칙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하기</li> <li>■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</li> </ul> <p>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식사 시 대화 자제</li> <li>■ 대화 시 마스크 착용</li> <li>■ 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</li> </ul> <p>■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</p>

<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</li> <li>▲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</li> <li>▲대화 금지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</li> <li>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</li> </ul>
화장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</li> <li>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 <li>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</li> <li>▲ 사용 전/후 손씻기</li> </ul>
탈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</li> <li>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</li> <li>▲ 손소독제 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 <li>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</li> <li>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</li> </ul>
샤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</li> <li>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</li> <li>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</li> <li>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</li> </ul> <p>*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</li> <li>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</li> <li>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</li> <li>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</li> </ul>
휴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</li> <li>▲ 대화 자제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 <li>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</li> <li>▲ 대화 자제</li> </ul>
탕비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 <li>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</li> </ul>
민원창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</li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</li> <li>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</li> <li>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</li> </ul>

#### 4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이 공포(7.7.)됨에 따라 시설별 (기본) 방역수칙 중 ‘운영시간 제한’ 위반의 경우,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(집합제한 조치 위반)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**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**제80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**제83조(과태료) ②**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**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#### 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다중이용시설 등 1~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 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(감염병예방법 제83조),  
**집합제한 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 시 고발 조치**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
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\**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(운영시간 제한 등)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**

\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